



제 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영업 승계 신고대상 확대 및 영업 승계 신고의
법적 성격 명확화 등〉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86호)

2024.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영업 승계 신고 대상 확대(안 제24조제1항·제2항)	3
2. 영업 승계 신고의 법적 성격 명확화(안 제24조제3항)	11
3. 영업 승계 신고 수리여부 통지기간 설정 및 수리 간주제 도입 등 (안 제 24조제4항~제6항 신설)	18
4. 가축 처분 의무대상에 가축사육업 등록 취소자 추가(안 제25조제3항) ...	24
5. 축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업종·규제 목적별로 구분 등(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등)	32
6.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 요청 근거 마련(제50조의2 신설) ..	40
7. 가축 처분 불이행한 가축사육업 등록 취소자 및 가축을 유기한 가축사 육업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53조, 제54조)	46
8. 가축사육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56조제 1항제6호의2·제6호의3, 안제5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56
9. 부칙	67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만희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8. 13.

다. 회 부 일 : 2024. 8.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축산법은 축산업의 발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 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간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유기된 사슴으로 인해 섬(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안마도 등) 생태계 및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축산업자의 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육 밀도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과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거나 복잡한 법체계로 인해 축산농가 등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하기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축산업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 외에 가축사육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자도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게 하고, 사육하던 가축의 유기를 금지하면서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무단 유기된 가축으로 인한 생태계 및 농작물 등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라면 누구나 알기 쉽게 법적 준수사항을 업태별, 규제 목적별로 구분 규정하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하고 있는 방역 준수 의무와 유사한 규정은 축산업자 등의 법 준수 부담을 고려해 위반 시 처분을 완화하려는 것임.

또한, 영업 신고 절차상 수리제도를 마련하고,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인수 시에도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명확한 법 규정으로 인한 축산업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영업의 승계 신고 절차상 ‘수리제도’를 마련하고,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인수 시에도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4조).
- 나. 축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업태별, 규제 목적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위반 시 처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게 체계를 정비하면서 가축의 유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26조, 제27조).
- 다. 농식품부의 직무수행을 위해 관계행정기관, 지자체, 축산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0조의2조).

Ⅲ. 검토의견

1. 영업 승계 신고 대상 확대(안 제24조제1항·제2항)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 현행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① 사망, ② 영업의 양도, ③ 법인의 합병 시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상기 영업 승계 신고 대상에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¹⁾(換價), ③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영업의 승계)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제24조(영업의 승계)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1) 금전 이외의 재산을 매각 등의 방법에 의해 상당한 가액의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

현행	개정안
<u>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u> ② <u>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u>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경우,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이 있는 경우로서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또는 분할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영업에 관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합병일, 분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그 사실을 -----.</u>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2)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도 영업 승계 신고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2) 관련 협회

-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육계협회, 토종닭협회, 오리협회, 양봉협회 별도 의견 없음.

3) 검토의견

- ☐ 현행법은 축산업의 지위를 승계하는 요건으로 사망·양도 및 합병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매·환가·매각 등으로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경매·환가·매각²⁾ 등으로 적법하게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 현행법상 양수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새롭게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에 관한 영업 승계 관련 타 입법례】

「동물보호법」
제75조(영업승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소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6조(영업의 승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타 입법례를 살펴보면, 경매·환가·매각 등으로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영업 승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경매·환가·매각 등의 절차를 통해 기존 양도인 등의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도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영업 승계 신고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상기 영업 승계자의 불편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안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 승계 신고 기간(30일)의 경우에도 유사 입법례를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행정처분 승계 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³⁾을 보면, 축산업의 허가 및 가축사육업의 등록(이하 “축산업 허가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그 허가 및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

3) 「축산법」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24조⁴⁾에 따르면, 영업의 양도나 법인의 합병 등이 있는 경우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등은 양도인 등의 지위를 승계하나,

양도인 등이 저지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까지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4) 「축산법」

제24조(영업의 승계)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관련 유사 입법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27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u>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한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u>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①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u>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u> ②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하여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진행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위법행위를 한 축산업 허가 등을 받은 자가 운영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처분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유사 입법례와 같이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또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추가로 규정할 경우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영업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음.

2. 영업 승계 신고의 법적 성격 명확화(안 제24조제3항)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 개정안은 현행법 제24조에 따라 영업의 승계를 신고하는 양수인, 상속인 및 합병 또는 분할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 등”이라 한다)이 현행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영업의 승계)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4조(영업의 승계)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양수인, 상속인, 합병 또는 분할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및 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2)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 현행 「축산법」상 영업 승계 신고 수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허가증 등의 교부를 거부할 수 없는바, 보완 요청사항의 시정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일단 허가증을 교부하고, 허가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 승계 신고 수리

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함.

(2) 관련 협회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육계협회, 토종닭협회, 오리협회, 양봉협회 별도 의견 없음.

3) 검토의견

□ 강학상 신고란 사인이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의미함.

신고는 학설·판례⁵⁾상 ①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와 ②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구분할 수 있음.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행정절차법」 제40조⁶⁾에 따라 ‘행정

5)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목적과 당해 법령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련 조문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유기적인 해석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 ① 법률에 수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② 신고와 허가 또는 등록을 동시에 대비시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③ 법률 연혁상 규제 완화 등의 차원에서 허가 또는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개정된 규정인지 여부, ④ 신고사항의 진실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거나 신고사항의 흠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수리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⑤ 신고행위의 효력 시기에 관한 규정 유무, ⑥ 아무런 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형식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⑦ 수리의 요건으로서 형식적 요건 외에 검토와 확인 등 실질적 심사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⑧ 수리 없는 행위의 처벌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대판 2011.9.8., 2010도7034; 창원지법 2015.12.9, 2015노798 등)

6) 「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③ 행정청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

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로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상태로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하면 신고의무의 이행이 완료됨.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행정기본법」 제34조7)와 같이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행정청이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

【 수리여부에 따른 신고 비교 】

구분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
개념	행정기관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완료되는 신고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
신고 요건	형식적 요건	형식적 요건 + 실질적 요건
심사 방식	형식적 심사	형식적 심사 + 실질적 심사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행정기관의 수리
수리 관련 명문 규정 여부	없음	있음

자료: 법제기준과 실제(국회 법제실, 2024. 5.) 재구성

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7) 「행정기본법」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2021년 3월 「행정기본법」이 제정(2021. 9. 24. 시행)되면서 동법 제34조⁸⁾에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여,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지 않은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도록 하였음.

이에 따르면, 현행 「축산법」 제24조제2항의 영업 승계 신고의 경우 신고의 수리와 관련하여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현행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 승계 신고 시 세부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제31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보면,

해당 신고서 접수 후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영업 승계 신고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증 및 등록증을 작성·발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현행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 승계 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하면 신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운용되고 있지 않고,

8) 「행정기본법」

제34조(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 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신고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 후 신고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운용되고 있음.⁹⁾

이와 같이 현행법상 영업 승계 신고 수리와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반면, 실제 운용은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운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일선 현장에서 이와 관련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영업 승계 신고를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일선 현장에서 행정청 및 국민의 법률 해석과 적용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현행법상 영업 승계 신고의 성격을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명확히 할 경우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영업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영업 승계 신고에 따른 현장 확인 과정에서 축사시설 등이 허가 또는 등록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승계자에게 보완 요청을 하고, 이러한 보완 요청이 완료되는 상황에 따라 축산업 허가증 등을 교부하고 있다는 입장임 다만, 현행 「축산법」상 영업 승계 수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허가증 등의 교부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보완 요청사항의 시정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일단 허가증을 교부하고, 허가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자료 】

■ 축산업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3. 12. 8.>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	------	------	-----

사업장	명칭	축산업 종류
	허가(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승계를 하 는 자	성명(법인명) 주소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신고인 (승계를 받 는 자)	성명(법인명) 주소	주민(법인)등록번호
-----------------------	---------------	------------

승계사유	[] 양도·양수 [] 상 속 [] 법인합병
「축산업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축산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4.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5. 「축산업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2. 합병 후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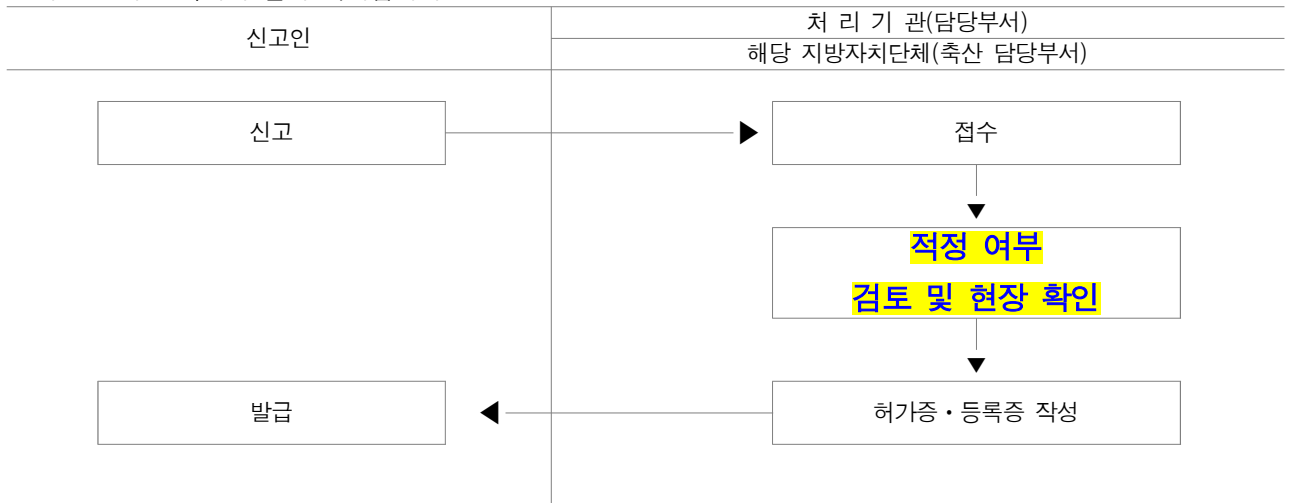
개인정보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1.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및 가축사육 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 관리·정기점검·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2조의2, 제28조,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활용, 축산업 허가·등록자 관리·정기점검·교육, 가축방역지원, 축산물안전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권한의 위임·위탁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법」 제33조의3에 따른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에게 제공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3. 이 신고서에 기재한 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총괄기관 및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축산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축산업 허가·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허가·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총괄기관은 허가·등록 말소 후에도 축산업 허가·등록 및 교육이수자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축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축산업 허가·등록자의 보수교육 안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설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3. 영업 승계 신고 수리여부 통지기간 설정 및 수리 간주제 도입 등 (안 제24조제4항~제6항 신설)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 개정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영업 승계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제’를 도입하는 한편, 영업 승계 효력 발생일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영업의 승계) ④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신 설>	⑤ <u>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u>

현행	개정안
<신 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5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 또는 분할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또는 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양도일, 상속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 ☐ 영업 승계 신고 수리 전까지의 신고자의 법적 지위 불안정 상태의 신속한 해소가 필요한 측면과 타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수리 간주 규정이 필요하고, 승계 효력 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2) 관련 협회

-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육계협회, 토종닭협회, 오리협회, 양봉협회 별도 의견 없음.

3) 검토 의견

- ‘신고수리 간주제’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 법률에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신고수리를 간주하는 경우 행정청의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개선하고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간 도과 시 수리가 간주되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등과 관련되어 사후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분야인 경우 신고 수리 간주규정을 두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겠으나, 「축산법」의 축산업의 허가 등의 사항이 국민안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을 통해 민원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같이 영업 승계 신고에 대하여 수리 간주규정을 두는 경우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영업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신고수리 간주제 관련 유사 입법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영업의 승계)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u>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u>그 기간</u>(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u>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u>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의2(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u>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u>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u>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0조(영업의 승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u>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u>그 기간</u>(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u>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u>
인삼산업법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 등)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u>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④ 시장·군수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u>그 기간</u>(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u>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u>

- 다음으로, 안 제24조제4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영업 승계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신고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신고수리 여부에 대한 통지 기간이 짧을수록 신고인인 국민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고,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적절한 기간으로 보임.

- 한편, 안 제24조제1항에서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업 승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24조제6항에서는 영업 승계 신고가 수리된 경우 “양도일”부터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시설(축사 등)에 대한 법적 의무 등이 영업 승계 신고에 따른 공백 없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영업 승계의 효력 발생 시점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일반적으로 양도와 양수는 동일한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양수일이 양도일보다 선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양수일”이 아닌 “양도일”로 영업 승계 신고의무 발생 시점 및 영업 승계 효력 발생 시점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의무 등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양도일 규정 관련 유사 입법례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지위의 승계)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또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회사를 분할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 또는 분할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전부를 승계한 회사는 <u>그 양도일</u>,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회사는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u>그 양도일</u>,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종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7조(사업의 승계 등)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u>그 양도일</u>, 합병일 또는 인수일부터 종전의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지위승계)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상속일, <u>양도일</u>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⑦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u>양도일</u>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목재생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4. 가축 처분 의무대상에 가축사육업 등록 취소자 추가(안 제25조제3항)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 개정안은 현행 축산업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가축 처분 의무를 가축사육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교육·소독 등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입국 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를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제1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살처분(殺處分)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취소 또는 변경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8. 「약사법」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9.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장비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10.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한 경우 4.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5. 제2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축사·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u>허가취소 처분</u>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제3호 또는 제4항제3호에 따른 축사·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처분,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u>허가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u>----- -----. ④·⑤ (현행과 같음)

2)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 ☐ 과거 안마도 사슴 방목 피해와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가축사육업 등록 취소자에 대해서도 가축 처분 의무가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2) 관련 협회

-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육계협회, 토종닭협회, 오리협회, 양봉협회 별도 의견 없음.

3) 검토 의견

- ☐ 현행법 제22조¹⁰⁾ 및 현행법 시행령 제13조¹¹⁾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 면적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축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기 기준 미만 시에는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
- ☐ 현재 축산업은 ① 종축업(783개), ② 부화업(231개), ③ 정액등처리업(90개), 가축사육업(123,050개)으로 구분되어 있음.

10)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종축업
2. 부화업
3. 정액등처리업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11) 「축산법 시행령」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1. 2015년 2월 22일 이전: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 가. 사육시설 면적이 6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 나. 사육시설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 다. 사육시설 면적이 1천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 라. 사육시설 면적이 1천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2. 2015년 2월 23일부터 2016년 2월 22일까지: 다음 각 목의 가축사육업
 - 가. 사육시설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 사육업
 - 나. 사육시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
 - 다. 사육시설 면적이 9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닭 사육업
 - 라. 사육시설 면적이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리 사육업
3. 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

【 축산업 허가 및 가축사육업 등록 비교 및 업체 개수 】

축산업 허가		가축사육업 등록	
종축업 (783개)	종축 ¹²⁾ 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	
부화업 (231개)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	
정액등처리업 (90개)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	—	
가축사육업 (109,830개) (사육시설면적 50㎡ 초과 소·돼지·닭·오리 ¹³⁾)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 ¹⁴⁾ 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	가축사육업 (13,220개) (사육시설면적 50㎡ 미만 ¹⁵⁾ 소·돼지·닭·오리 ¹⁶⁾)	가축사육업 허가와 동일

자료: 현행법령 재구성 및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2024. 9. 20.)

12) 「축산법」

6. 제2조(정의) 2. “종축”이란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을 말한다.

13)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축산법 시행령」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3. 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

14) 「축산법」

6. 제2조(정의)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면양·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5) 사육시설면적 10㎡ 미만 닭·오리 등: 미등록

16)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현행법 제25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축산업의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가축 처분 의무가 규정되지 않아,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하거나, 등록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가축을 사육할 우려가 있음.

□ 2023년 7월 전라남도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분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가 2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안마도에는 과거 사슴이 없었으나,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안마도에 유기한 것이 시초로 추정되며,

현재는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가운데 사슴이 수백 마리로 늘어나 안마도는 물론 석만도 등 인근 섬까지 퍼졌음을 확인하였음.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안마도 사슴 피해와 같이 유기 가축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농작물 등 피해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¹⁷⁾을 의결('23.12월)한 바 있음.¹⁸⁾

□ 안마도 사례와 같이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주변 지역의 농작물 훼손 등 주민들의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가축사육업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가축을 계속하여 사육하는 경우 현행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축사육업의 허가와 등록 간에 차이가 사육시설의 면적¹⁹⁾뿐이므로, 이를 달리 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가축사육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게도 가축 처

17) 의결사항 : ①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 의무 부과, ② 가축을 유기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18)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애물단지’ 안마도 사슴 피해, 30년 만에 해결 전망’(2024. 1. 16.)

19)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축산법 시행령」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3. 2016년 2월 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돼지·닭 또는 오리 사육업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분 의무를 부여하여 법 체계의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가축유기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 다만, 개정안 부칙에서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소급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안마도 사슴을 비롯한 이 법 시행 전 가축 유기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이 불가한 것으로 보임.

5. 축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업종·규제 목적별로 구분 등(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등)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 개정안은 현행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을 업종·규제 목적별로 구분하고,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가축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6조(종축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의 준수사항)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축과 종란(種卵)을 건강하고 위생적으로 사육·관리할 것 2. 가축의 개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제27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① ----- ----- ----- -- 자(이하 이 조에서 “가축사육업자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

현행	개정안
<u>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u> <신설> <신설> <신설> <신설> <u>②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u> <신설> <신설>	<u>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u> <u>1. 축사의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처리·관리에 관한 기준</u> <u>2. 가축의 위생수준 향상과 축산물 오염 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 위생관리 기준</u> <u>3.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질병 예방 기준</u> <u>4.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 건강관리 기준</u> <u>② 가축사육업자 등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가축을 유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③ 가축사육업자 등은 제22조제2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이상으로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가축사육업자 등에게 이행을 권장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u>

2)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 ☐ 법 준수사항을 업종별·규제목적별로 구분하여 축산업자의 이해를 쉽게 하고, 필요 시 영업의 종류별로 처분기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법 집행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2) 관련 협회

-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육계협회, 토종닭협회, 오리협회, 양봉협회 별도 의견 없음.

3) 검토 의견

- ☐ 현행법 제26조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축산업 허가를 받은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① 가축의 개량, ② 가축질병의 예방, ③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④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2조(정의) 제4호를 보면, 축산업은 ① 종축업, ② 부화업, ③ 정액등처리업, ④ 가축사육업으로 구분됨. 현행법 제26조는 이 중 ④ 가축사육업을 중심으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① 종축업, ② 부화업, ③ 정액등처리업과 관련한 별도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축산업 업종별 구분 】

구 분	내 용	업종 성격	업체 개수(개)
종축업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허 가	783
부화업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231
정액등처리업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		90
가축사육업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	사육시설면적 50㎡ 초과 소·돼지·닭·오리: 허가	109,830
		사육시설면적 50㎡ 미만 소·돼지·닭·오리: 등록	13,220
		사육시설면적 10㎡ 미만 닭·오리 등: 미등록	-

자료: 축산법령 재구성 및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2024. 9. 20.)

또한, 현행법상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에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공장식 축산²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가축의 유기 금지 규정도 없어 안마

20) 최소 비용으로 생산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동물이 생명체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와 습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물을 한정된 공간에서 대규모 밀집 사육하는 축산의 형태

도 사슴 방목 피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26조의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에 관한 규정과 가축의 유기 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법 준수사항을 업종별·규제목적별로 구분하여 축산업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필요 시 영업의 종류별로 처분기준을 달리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가축 유기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 개정안의 가축 유기 금지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의결(“23.12.” 권고를 수용하는 의미도 있음.²¹⁾

□ 다만, 안 제27조제1항에서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를 “가축사육업자 등”으로 약칭하면서 제27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가축 사육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축산업의 허가²²⁾ 중 부화업²³⁾의 경우 ① 종축업(종계업, 종오리업)

21) 의결사항 : ①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 의무 부과, ② 가축을 유기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22) 「축산법」

6. 제2조(정의) 4. “축산업”이란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23) 「축산법」

6. 제2조(정의) 6. “부화업”이란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의 별도 허가를 받아 종축을 사육하면서 부화업에 종사하거나,
② 종축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종란을 구입하여 부화한 즉시 병아리를 가축사육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②의 경우 가축²⁴⁾의 사육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허가 요건에도 가축 사육시설에 관한 기준이 없음.

따라서, 안 제27조제1항에서 “축산업 중 부화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하여 가축 사육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화업의 실제 운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부화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안 제27조제1항의 준수사항 이행 의무 대상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즉, 안 제27조제1항을 “제22조제1항에 따라 종축업, 정액등처리업 또는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가축사육업자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또한, 안 제27조제1항을 위와 같이 수정할 경우 안 제27조의 제목을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에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24) 「축산법」

6. 제2조(정의)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면양·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으로 보임.

□ 한편, 안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가축사육업자 등으로 하여금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 건강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27조제3항에서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 사육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가축사육업자 등에게 이행을 권장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가축을 포함한 동물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항들을 현행 「동물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²⁵⁾하고 있으나, 해당 의무 불이행 시 처벌 규정이 없는바,

개정안은 「축산법」에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의무 불이행 시 처벌하려는 것임.

25) < 동물보호법상 농장동물의 주요 복지 기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

- ① 동물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하고,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복지를 증진
- ② 동물이 갈증, 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 질병, 고통 등이 없도록 노력
- ③ 동물의 특성, 건강상태, 사육목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
- ④ 사육 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고 움직일 수 있는 크기
- ⑤ 축사 내부의 평균조명도는 돼지 최소 40럭스 이상, 육계 20럭스 이상으로서 각각 8시간, 6시간 이상의 연속된 명기를 제공
- ⑥ 소, 돼지, 산란계, 육계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ppm 이하
- ⑦ 돼지의 송곳니 발치·절치 및 거세는 생후 7일 이내에 수행 등

□ 공장식 축산²⁶⁾은 휴식과 식사, 배설 등 가축의 모든 활동이 제한된 공간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위생상태가 청결하게 유지되지 못하여 가축의 질병이 발생·확산되는 등 축산 농가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와 같이 병든 가축의 고기를 섭취할 경우 국민의 건강에도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가축의 복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위생적인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26) 최소 비용으로 생산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동물이 생명체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와 습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물을 한정된 공간에서 대규모 밀집 사육하는 축산의 형태

6.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 요청 근거 마련 (제50조의2 신설)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 개정안은 「축산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50조의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지자체, 축산관련 기관·단체²⁷⁾ 등에 자료,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27) 농협,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오리협회, 토종닭협회, 양봉협회 등

(2) 관련 협회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육계협회, 토종닭협회, 오리협회, 양봉협회 별도 의견 없음.

3) 검토 의견

- 현행법 제3조²⁸⁾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환경·축산업의 구조 개선 및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 제32조의2²⁹⁾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42조의13³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8)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29) 「축산법」

제32조의2(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30) 「축산법」

제42조의13(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①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 ②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③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또는 의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자료 협조 요청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함.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 다만, 유사 입법례를 보면,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등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안 제50조의2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협조 요청 관련 유사 입법례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의3(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4조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u>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u>이 경우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항만안전특별법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u>관리청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적정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u>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u>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등 방지 시설을 점검하거나, 화재등에 대비한 훈련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재등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한 경우에</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u>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u>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도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u>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1.30.>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u>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u>

□ 한편, 관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협조 요청과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50조의2의 경우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협조 요청 사항이 다소 광범위한 측면이 있으므로, 협조 요청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안 제50조의2에서 “시·도지사”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5조제2항31)에 따라 “시·도지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의미함.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협조 요청을 할 경우를 고려하여 협조 요청 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31) 「축산법」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량 대상 가축별로 기간을 정하여 가축의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가축 개량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고 가축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축개량추진계획의 시행과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의 가축개량업무 추진에 필요한 우량종축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마지막으로, 안 제50조의2에서 협조 요청 대상으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경우 그 대상이 광범위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를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7. 가축 처분 불이행한 가축사육업 등록 취소자 및 가축을 유기한 가축사육업자 등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53조, 제54조)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 개정안은 안 제25조제3항에 따른 가축 처분 의무 불이행 시 벌칙 대상에 ‘현행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를 받은 자’를 추가하고, 안 제27조제2항에 따른 가축 유기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벌칙) ----- ----- ----- ---
1.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한 자	1. ~ 3. (현행과 같음)
2. 삭제 <2010. 1. 25.>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에도 계속 가축을 사육하는 자	4. ----- <u>처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u> ----- -----
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 21. (현행과 같음)
6.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거래를 업으로 한 자	
7.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현행	개정안
아니한 축산물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한 자 8.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자 9. 제42조의8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한 자 10. 제42조의8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인증업무를 한 자 11. 제42조의9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 장 및 재심사 또는 제42조의8제1항 및 제3 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갱신을 받은 자 12. 제42조의9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 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 도록 도와준 자 13. 제42조의9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14. 제42조의9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 대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 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	

현행	개정안
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한 자 15. 제42조의9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16. 제42조의9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17. 제42조의9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한 자 18. 제42조의9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한 자 19. 제42조의9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진열한 자 20. 제42조의9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21.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	

현행	개정안
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업무를 한 자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정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를 대여한 자 1의3.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를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주입하거나 이를 암가축에 이식한 자 2의2.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한 자 <u><신 설></u>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축시장을 개설한 자 4. 삭제 <2018. 12. 31.>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제54조(벌칙) ----- ----- ----- ---.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u>가축을 유기한 자</u> 3. ~ 9.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 5. 제35조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이 고시된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을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고시지역 안에서 판매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가공·진열·보관 또는 운반한 자 6.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평가가 하는 등급판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3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의 판매금지·판매정지·회수·폐기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 ☐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6개월 후에도 계속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해서는 유사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³²⁾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형벌체계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32) 현행법은 ‘축산업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6개월 후에도 계속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관련 협회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육계협회, 토종닭협회, 오리협회, 양봉협회 별도 의견 없음.

3) 검토 의견

- 현행법 제25조제1항에서는 ① ‘축산업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6개월 내에 가축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②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상기 가축 처분 의무 및 의무 불이행 시 벌칙이 규정되지 않아,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하거나, 등록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가축을 사육할 우려가 있음.

【 가축 처분 의무 불이행 관련 비교 】

가축 처분 의무 불이행	현 행	개정안
① 축산업 허가취소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좌 동
②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1985년경 영광군 안마도에 방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0마리의 사슴으로 인한 주민의 농작물 등 피해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³³⁾을 의결(‘23.12월)한 바 있음.

위 사례와 같이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주변 지역의 농작물 훼손 등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음.

또한, 가축사육업의 허가과 등록 간에 차이가 사육시설의 면적³⁴⁾뿐이므로, '가축사육업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게 부여하는 '가축처분 의무'를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게 부여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게도 가축 처분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형벌체계의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가축 유기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 다만, 안 제53조제4호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같은 조 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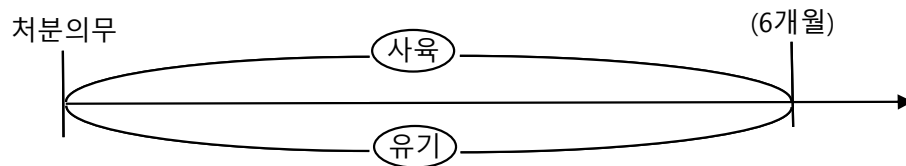
33) 의결사항 : ①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 의무 부과, ② 가축을 유기하는 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34) 사육시설면적 50㎡ 초과: 허가 / 사육시설면적 50㎡ 미만: 등록

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에도 계속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25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가축을 처분하여야 한다.”고 ‘가축처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상기 ‘가축처분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는 ‘계속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외에 ‘가축을 유기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안 제53조제4호를 “제25조제3항을 위반한 자”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안 제54조제2호의3에서는 안 제27조제2항³⁵⁾을 위반하여 가축을 유기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3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안, 제2202786호)

제27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② 가축사육업자 등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가축을 유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53조제4호가 ‘축산업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를 받은 자’가 그 처분 후 6개월 내에 가축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축산업 중 가축 사육과 관련된 ① 종축업, ② 정액등처리업, ③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④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현행 「축산법」 상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임.

그러나, 맹견 외의 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³⁶⁾하여 가축을 유기할 경우 주변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처벌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36)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제9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제3호·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이 해당 가축을 유기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가축 유기로 인한 주변 지역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8. 가축사육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56조제1항제6호의2·제6호의3, 안제56조제2항제3호의2 신설)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 개정안은 안 제24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규정된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축사육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6조(과태료) ① ----- ----- -----.
1.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1. · 2. (현행과 같음)
2. 제22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 -----
4.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 6. (현행과 같음)
5.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신설>	6의2.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신설>	6의3.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7.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7.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위반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u><신 설></u> -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제42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 제4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생산·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정기적으로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제4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제42조의6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로서 제42조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u> 4. ~ 18.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한 자 14. 제42조의8제5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중요 사항을 승인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15.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의10제1항 또는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6. 제42조의11을 위반하여 인증기관이나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7.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8.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 (현행과 같음)

2)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 ☐ 개정안과 관련된 영업승계의 미신고 및 축산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가축질병 예방관리 의무 위반 시 처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유사 내용이 있고,
- 동 위반행위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과태료 상한액이 3백만원 또는 1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를 조정(1천만원 이하 → 5백만원 이하) 하려는 취지에 공감함.

(2) 관련 협회

-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육계협회, 토종닭협회, 오리협회, 양봉협회 별도 의견 없음.

3) 검토 의견

□ 안 제56조제1항제3호는 안 제24조제2항³⁷⁾에 따라 추가로 규정된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현행법 제24조제2항³⁸⁾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와 동일한 과태료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승계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56조제1항제6호의2는 ① 축사의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처리·관리에 관한 기준, ② 가축의 위생수준 향상과 축산물 오염 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 위생

3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안, 제2202786호)

제24조(영업의 승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38) 「축산법」

제24조(영업의 승계) ②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관리 기준, ③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 건강관리 기준(안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법 제56조제1항제6호³⁹⁾에서 ①, ②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규정하고 있고, ③의 경우에도 공장식 축산의 폐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56조제1항제6호의3은 안 제27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 사육기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한 것임.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으로 인해 2024년 여름에만 돼지 6만 1,000마리, 가금류 99만6,000마리 등 총 105만7,000마리가 무더위로 폐사했고,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농장동물은 724만 마리에 육박하는 실정임.⁴⁰⁾

39) 「축산법」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축산법」

제26조(축산업 허가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40) 한국일보 ‘폭염에 쓰러진 백만 농장동물.. 밀집 사육한 축산업자만 범인일까?’ (2024.9.3.)

이와 같은 막대한 집단폐사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자체가 가장 큰 이유겠으나, 제한된 공간에서 밀집하여 사육하는 공장식 축산에 따른 가축의 체온 상승 또한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 사육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밀집 사육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 다음으로, 안 제56조제2항제3호의2는 안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인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질병 예방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56조제1항제6호⁴¹⁾에서는 상기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56조제2항제3호의2는 축산농가의 부담 경감 측면에서 이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향하여 규정하고 있음.

41) 「축산법」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축산법」

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축사육업자등에 대한 준수사항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액수 】

구 분	내 용	위반 시 현행법상 과태료 액수	위반 시 개정안 과태료 액수
안 제27조제1항제1호	축사의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 처리·관리에 관한 기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좌 동
같은 항 제2호	가축의 위생수준 향상과 축산물 오염 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 위생관리 기준		
같은 항 제3호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질병 예방 기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항 제4호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 건강관리 기준	—	신 설

자료: 축산법령 재구성

그런데, 유사 입법례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⁴²⁾를

4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죽거나 병든 가축의 발견 및 임상관찰 요령
2.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3.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
4. 가축의 신규 입식 및 거래 시에 방역 관련 준수사항
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방역관에게 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보면, 안 제27조제1항제3호의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질병 예방 기준”과 유사하게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축산법」 및 「가전법」의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축산법령상의 가축질병 예방과 관련한 사항과 가전법령상 가축 전염병 예방 관련 사항이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보임.

【 축산법 시행규칙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관련 비교 】

축산법 시행규칙(별표 3의3) 상 가축질병 예방 관련 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과 비교
1. 공통사항 나.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질병의 방역 등을 위해 관계없는 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육시설에 출입시키지 않을 것	가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제2호가목*과 유사 * 가. 농장 출입구는 항상 닫혀 있어야 하며,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다. 사육시설 내에서는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하고, 사육시설 내로 종업원 등 관계자를 출입시키는 경우에도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작업복 및 신발을 착용하도록 할 것	별표 2의4 제2호다목*과 유사 * 다. 농장 출입자를 위한 농장 전용 의복·신발(일회용 방역복 · 덧신을 포함한다)을 비치하 여야 하고 농장 전용 의복·신 발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야 한다.
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하며, 최종 기재일부터 1년 동안 이를 보관할 것	가전법 제17조제5항 및 제6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9항*과 유사 * ⑨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소독 실시기록부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이를 보관(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관 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바. 기르는 가축의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해야 하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조에 따라 폐사 현황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2년 동안 보관할 것	가전법 제51조제1항,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2의4 제1호가목*(건강상태 확인), 기록보관은 근거 없음(보고가 있음) * 가. 사육하는 가축을 매일 살펴 보고 물·사료의 섭취 감소, 활 력 저하 등 평소와 다르게 이 상이 있는 가축은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한다.
사.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가축방역 및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가전법 제6조제1항* (고용인에 대한 교육), 다만, 기록유지에 관한 근거는 없음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 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에게 가축방역에 관한 교 육을 하여야 한다
5. 가축사육업 가. 별지 제71호서식의 입식·출하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고, 그 내용을 1년 동안 보관할 것. 다만, 「가축전염 병 예방법」 제51조에 따라 폐사 현황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해당 없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2024. 9. 20.)

□ 따라서, 안 제27조제1항제3호의 준수사항 위반 시 가축질병이 발생하고 확산될 우려가 있는 측면과,

개정안과 유사 내용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의 준수사항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기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와 비교 시에도 안 제27조제1항제3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경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현행법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위반행위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향 조정하려는 안 제56조제2항제3호의2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부칙

1)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 개정안 부칙은 개정안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규정하고, 안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하도록 ‘가축 처분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2) 검토 의견

- 안 제25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자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6개월 내에 가축 처분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혼선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 부칙의 적용례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24조 영업의 승계와 관련하여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추가로 규정할 경우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영업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고,

안 제24조제3항에 따라 현행법상 영업 승계 신고의 성격을 ‘수리

가 필요한 신고'로 명확히 할 경우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영업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24조제5항과 같이 영업 승계 신고에 대하여 수리 간주 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영업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6